서울의 기업환경 국제비교

○ 1997년 세계은행이 세계 69개국의 3,685개 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기업 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obstacles for doing business)"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확인됨

[표 1] 기업활동에 대한 장애요인 (obstacles for doing business)

구 분	장애도 순위
세금규제 또는 높은 세율	1
부패	2
재원조달	3
도시인프라	4
범죄	5
인플레이션	6
규제로 인해 초래될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7
정부정책의 일관성	8
노동시장 규제	9
무역에 대한 규제	10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	11
창업에 대한 규제	12
외환규제	13
가격 통제	14
테러리즘	15

자료: "Institutional obstacles to doing business: region-by-region results from a worldwide survey of the private secto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759, World Bank, 1997.

- 상기의 장애요인들은 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업들은 각종 규제, 조세, 투명성 여부, 사회적 위험, 인프라 관련 사항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도시인 서울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의 비즈니스환경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서울경제,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서 서울의 기업환경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고 해외직접투자 증대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서울의 전반적인 기업 환경

○ 서울의 경우 사회전반적으로 보호주의 색채가 남아있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잔존하며,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유연성이 떨어져 역내 경쟁 도시에 비해 기업환경이 열위를 보임

[표 2] 비즈니스 환경

구 분	홍 콩	싱가폴	중 국	한 국
보호주의 약화	7.955	7.938	7.172	4.979
기업활동의 용이성	8.800	8.630	6.580	4.570
제도의 효율성	6.178	6.563	5.080	5.184
노동규제의 유연성	8.364	8.277	4.680	2.612
숙련 노동자	7.050	7.420	4.340	5.710
글로벌화	6.533	5.938	4.000	6.000

주: 1) 1~10 : 10으로 갈수록 효율성이 높음 (2002년말 기준)

자료: IMD, 국제경쟁력평가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 중국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제도의 효율성, 숙련노동자, 글로벌화 부문에서는 앞서 있으나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는 점에서 서울과 상해와의 비교에서는 이 격차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표 3] 서울과 역내 경쟁도시간 기업환경 비교

구 분	노동시장	조세	외환규제	영어	개방적	총평점	
		인센티브	기원 11 세	구사정도	태도		
서울	-2	0	-1	-1	-1	-5	
상해	0	0	-1	0	+1	0	
동경	-1	-1	0	-1	+1	-2	
- 싱가폴	+2	+2	+2	+2	+2	+10	
홍콩	+2	+2	+2	+2	+2	+10	

주: -2(worst), -1(bad), 0(satisfactory), +1(good), +2(excellent)

자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2002)

○ 각종 규제, 조세인센티브 등 주요 분야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보면 다음 과 같음

금융, 행정, 기업 규제

○ 금융규제환경 측면에서 보면 홍콩, 싱가폴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융시장 개방도 및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홍콩, 싱 가폴, 한국, 중국 순을 기록함

[표 4] 금융 환경

구 분	홍콩	싱가폴	중 국	한 국
금융기관 규제약화	7.690	8.370	5.370	5.180
은행 규제약화	8.545	7.600	5.677	4.750
해외 금융기관의 접근성	9.000	6.875	5.691	7.184
금융기관의 투명성	7.455	7.385	4.182	4.367

주: 1) 1~10: 10으로 갈수록 효율성이 높음 (2002년말 기준)

자료: IMD, 국제경쟁력평가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 전반적인 행정규제 수준은 경영 환경 각 부문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으로 조사됨. 조사대상국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며, 중국보다 열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5] 행정규제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폴	홍콩	대만	말련
시장규제	40.2	21.7	26.8	36.5	10.5	10.2	23.7	34.5
노동규제	33.5	17.0	38.5	32.0	1.5	12.5	31.0	18.5
금융규제	44.5	19.5	36.3	45.8	16.3	9.3	39.3	38.5
해외금융	39.8	17.3	35.5	37.5	7.3	19.5	36.5	38.3

주: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정도 높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서울경제신문사,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2002.

-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 완화의 논리로 대기업을 규제함. 공정위는 30 대 그룹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자산 2조원 이상 기 업은 사외이사 의무비율 50%를 적용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
- 미국은 반독점법 이외의 대기업 규제가 없으며, 반독점법도 독점 우려보다 경제활동 자유를 우선하며, 수직적 내부거래나 기업 대형화를 허용하는 추세임. 일본은 출자총액제한을 2001년도부터 폐지하였음. 독일은 기업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독점과 카르텔을 조장. 중국은 90년대부터 M&A를 허용하고 수평적 대형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취함

조세인센티브

-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조세인 센티브임
- 2002년 현재 역내 국가들의 법인세율의 경우 우리나라(27%)가 싱가포르(22%), 홍콩(16%), 상해(포동지구: 15%), 대만(25%)에 비해서는 높음
 - 상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포동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이익발생 초년도에는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이후 법인세율 15%와 특별영업세 5%(이자마진기준)를 부과하고 있음
- 한국도 유사한 세금혜택을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부여하고 있으나 첨단 기술업종 등에 한정되고 있음
 -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5%, 1억원 이상은 27%임

- 법인세 감면의 대상은 i)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ii)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iii)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조세특례제한법,제 121조 1,2,3항)하는 사업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 1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에 대한 규정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이 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2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3항의 규정은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을 요함
- 기존 법인세 감면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관세자 유지역의 경우 7년간 100%, 3년간 50%이고,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3년 간 100%, 2년간 50%였으나, 200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은 외국인 투자지역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세금감면과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의 내용이 대폭 축소됨
- 그러나 서울의 경우 상해의 푸동지역과 같은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 측면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책은 한계가 많은 상황임

상해의 예: 강점과 약점

- 중국은 WTO 가입(2001. 12. 11) 이듬해인 2002년에 세계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지역으로 부상함
 - 이는 WTO 가입이라는 요인 이외에도 국가적인 투자환경 자유화 노력과 공공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2003, OECD)
- 상해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종합적 정보 및 투자자문을 위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며, 일정 규모이하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신청 후 10일내에인가 결정을 내리는 "10-days rule"을 적용
 - 또한 외국인투자용 공장부지는 30년~70년의 장기 임대제로 제공되며 토지임대료는 평방m당 \$500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약 1/5 수준에 불 과(포동투자관리처는 토지임대료 결정시 재량권을 행사)
-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 개방 측면에서 낙후성 잔존
 - 건전성 측면에서 영국시스템을 따르는 홍콩과 싱가폴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상해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고 있는 단계. 상해는 서울에 비해 금융부문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 엄격한 사무소 前置主義를 적용하고지점설치 3년 후 위앤화 영업허가를 발급함. 또한 상해 증권시장은 내국인전용 시장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관투자가(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QFII)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음

○ 외환 거래 통제

- 통화의 대환성에 있어 홍콩은 자유대환을 보장하는 반면 싱가폴은 역 외거래에 대해 부분적 제한, 상해는 자본거래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함
- 상해는 외환을 수반하는 모든 자본계정 결제에 대해 중앙은행의 허가 또는 외환지정은행의 심사를 요구(단 경상계정거래에 대해서는 1996 년 12월 IMF 제8조항 수용한 후 완전태환 허용)
- 상해는 상품, 서비스무역이나 해외상장 등을 통해 획득한 외환은 반드시 국내로 이전하여 예치시키는 '강제 외환결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합자기업의 경우 2002년 10월부터 일정한도의 외환보유(전년도 수출액의 20-25%) 허용. 중국기업이외국은행지점에 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외환관리국 (State Administration for Foreign Exchange)의 허가를 얻도록 규제
- 즉 상해의 경우 외환부분을 비롯한 금융시장개혁이라는 과제가 국제금 융센터로의 부상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투명성(Transparency)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

-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결국 투자수혜 후보지역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됨
- 서울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부문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 를 위한 인센티브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정부차원에서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와 세제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서울시도 현실적으로 가용한 모든 인센티브를 제 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는 금융이나 세제지원, 용지지원 등의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룰(Rule)에 기초한 투명한 정책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외국기업을 상대함에 있어 투명성을 보이지 않는 국가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2003, OECD) 시사하는 바가 큼

오용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yho@sdi.re.kr